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송재혁 의원 (대표) 발의)

의안 번호 839

발의년월일: 2019년 8월 7일

발 의 자 : 송재혁 의원 (1명)

찬 성 자: 이병도, 김화숙, 김제리,

김재형, 임종국, 박상구, 채유미, 봉양순, 강동길, 김평남, 문병훈, 김종무, 송아량, 권영희, 김정태,

박순규 의원 (16명)

1. 제안이유

서울시 비문해 성인들의 문자해득능력 및 서울생활에 요구되는 기초생활능력 함양을 위한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.

2. 주요골자

- 가.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1조)
- 나. 문해교육이 지향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함(안 제4조)
- 다.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와 지원을 규정함(안 제5조)
- 라.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5년 단위 종합계획 수립을 규정함(안 제6조)

- 마. 문해교육의 체계적·효율적 진흥을 위한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 지정·운영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바. 문해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의 근거를 규정함(안 제9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: 평생교육법, 평생교육법 시행령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

다. 기 타: 해당사항 없음.

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비문해 서울시민이 문자해득능력과 기초생활능력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"성인 비문해자"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 능력 등을 갖추지 못한 만18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.
- 2. "문자해득교육"(이하 "문해교육"이라 한다)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(文字解得)능력을 포함한 사회적·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.
- 3. "문해교육기관"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.

제3조(대상) 문해교육의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성인 비문해자로 하되. 결혼·이주 등으로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.

제4조(문해교육의 기본원칙) ① 문해교육은 비문해자 성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.

- ② 대상자의 나이, 성별, 직업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.
- 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.

제5조(시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 "시장"이라 한다)은 비문해자에게 문해 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·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제6조(종합계획의 수립·시행) ①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문해교육 종합계획(이하 "종합계획"이라 한다)을 5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문해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 - 2. 문해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
 - 3.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·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
 - 4. 문해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
 - 5. 문해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원체계 구축 · 운영에 관한 사항
 - 6. 문해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
 - 7. 그 밖에 문해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7조(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) 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(이하 "센터"라 한다)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.

-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에는 센터장과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
-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, 시설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
- 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 - 1.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지원
 - 2.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 및 지원
 - 3. 문해교육 교원 양성·연수 및 역량강화
 - 4.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업무
 - 5. 문해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
- 6.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8조(교류협력 등) 시장은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청, 자치구 및 민간단체 등과 긴밀하게 교류·협력한다.

제9조(문해교육기관 지원 등) ① 시장은 자치구 및 문해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,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」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○ 서울특별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조(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), 제9조(문 해교육기관 지원 등)에 따라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제3조제1항1호 및 제2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가.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[제7조(서울특별시문해교육센터)제1항, 제5항 제2호, 제3호, 제4호에 해당]
 - 1) 추계결과 ≒ 1,382,475천원(연평균 276,495천원)
 - 추계의 전제
 - 비용은 2020년부터 발생하고 추계기간 이후에도 계속 발생
 -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이 문해교육센터 운영을 전제
 - 문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센터장(2급) 1명, 3급 1명, 4급 2명으로 전제
 - 안 제7조 제5항 제4호의 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비는 제6조 제2항 제4호의 실태조사비를 포함한다고 가정하고,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시행 전제
 - 물가상승률 미반영

2) 상세 비용추계 결과

- 총 비용(합계) ≒ 1,382,475천원
 - = 750,000천원 + 163,385천원 + 399,090천원 +70,000천원
 - = 문해교육센터 운영비 + 프로그램 개발보급비 + 교원 양성·연수 및 역 량강화비 + 실태조사비

연도	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જોવો
구분		(2020)	(2021)	(2022)	(2023)	(2024)	합계
세입	-	-	-	_	-	-	-
	소계(a)	-	-	-	-	-	ı
세출	문해교육센터 운영비 (제7조)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150,000	750,000
	프로그램 개발·보급비 (제7조제5항2호)	55,354	78,031	10,000	10,000	10,000	163,385
	교원양성 및 역량강화 (제7조제5항3호)	79,818	79,818	79,818	79,818	79,818	399,090
	실태조사 및 연구개발비 (제7조제5항4호)	35,000	-	-	35,000	-	70,000
	소계(b)	320,172	307,849	239,818	274,818	239,818	1,382,475
□ 총 비용(b-a)		320,172	307,849	239,818	274,818	239,818	1,382,475

- 문해교육센터 운영비 ≒ 750,000천원
 - 연간비용 = 150,000천원
 - = 센터장(2급) 1명 (50,000천원) + 3급 1명 (40,000천원) + 4급2명 (60,000천원)
 - 복리후생비 등 기타 수당은 제외한 기본급만 추계
 - 자료 : 서울시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
-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·보급비 = 163,385천원
 - 연간비용 = 32,677천원

[(22,677천원 imes 2종 + 10천원) + (22,677천원 imes 3종 + 10천원) + (10천원 imes 3년)] ÷ 5년

- · 20년 교재 개발(2종), 21년 교재 개발(3종), 이후 연도는 보급, 매년 보급비 10천원 발생
- · 자료 : 온나라 정책연구. 「국내외 교육과정 활용을 위한 정부혁신 공통교재 개발」, 2018
- 문해교육 교원 양성·연수 및 역량강화비 = 399,090천원
 - 연간비용 = 79.818천원
 - · 자료 : 온나라 정책연구. 「한국어교원 양성 및 지원 효율화 방안 연구」, 2012
- 문해교육 실태조사비 = 70,000천원
 - 연간비용 = 35,000천원
 - · 실태조사는 3년에 1회 20년도, 23년도 시행
 - · 자료 : 온나라 정책연구. 「특수외국어 교육 실태조사 및 수요분석 연구계획」, 2017

나. 기술적 추계 곤란

○ 같은 조례안 제7조 제5항 제1호, 제5호 및 제9조(문해교육기관 지원 등)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나, 지원 대상 및 지원 금액 등이 구체적이지 않아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움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

담 당 관 남승우

사업평가팀장 이정수

주 무 관 백소영

2 02-2180-7954

e-mail: thdud36@seoul.go.kr